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 제 항 해 선 박 및 항 만 시 설 의
보 안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 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경호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무기 반입·소지 가능한 업무 및 무기의 종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안 제10조제1항)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만료된 것으로 봄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사례에 따라 상황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항만시설 보안업무 수행을 도모함
다.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업무(안 제11조의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해상경비업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라.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제11조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필요시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변경(제12조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요 항만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기관에 포함하여 보안위원회의 테러 방지역활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공조체제 강화를 도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하였거나,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실시하는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2. 유효기간 중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반납된 날의 전날까지
3. 유효기간 중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업하거나 매매 등으로 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폐업하거나 매매 등으로 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변경된 날의 전날까지

제11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특정 업무의 수행)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무

4.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5.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
· 검색업무

제11조의3(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 가능한 무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선박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권총, 분사기 또는 전기충격기
2.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1호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표기”를 “표기, 임시항만시설 적합확인서의 교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소지 허가

제15조제27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의2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u>법 제26조제2항</u>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	<u>법 제26조제3항</u> -----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u>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u> <단서 신설>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	----- <u>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u> 다만,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중간보안심사를 법 제26조제</u>

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하였거나,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실시하는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2. 유효기간 중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반납된 날의 전날까지

3. 유효기간 중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업하거나 매매 등으로 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폐업하거나 매매 등으로 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변경된 날의 전날까지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⑤ 제3항-----

-----.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 법 제33조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특정 업무의 수행)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

<신 설>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士) 경호업무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
률」 제2호제9호에 따른 해상
특수경비업무

4.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
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5.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
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
비원의 경비·검색업무

제11조의3(항만시설 등에 반입·
소지 가능한 무기) 법 제33조제
2항에 따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선박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조, 제6조의2 및 제6조
의3에 따른 권총, 분사기 또는
전기충격기

2.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
되는 무기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1명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등) ① -----

----- 위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2항-----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법 제26조에 따른 <u>항만시설보안심사</u>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1. ----- <u>항만시설보안심사</u> , <u>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u> , ----- -----
22.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 적합확인서의 교부 및 심사 결과의 <u>표기</u>	22. ----- ----- ----- <u>표기</u> , <u>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u>
23. ~ 24. (생략)	23. ~ 24. (현행과 같음)
<u><신설></u>	2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u>무기의 반입·소지 허가</u>
25. · 26. (생략)	25. · 26. (현행과 같음)
27. <u>법 제41조제1항</u> 에 따른 보고의 명령이나 자료 제출의 요구	27. <u>법 제41조제2항</u> ----- ----- --
28. <u>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u> 에 따른 선박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점검계획의 통보	28. <u>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u> -- ----- -----
29. <u>법 제41조제5항</u> 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29. <u>법 제41조제6항</u> ----- -----

명령	--
30. <u>법 제41조제6항</u> 에 따른 합 동 점검	30. <u>법 제41조제7항</u> ----- -----
30의2. <u>법 제42조제2항</u> 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	30의2. <u>법 제42조제3항</u> ----- ----- -----
31. (생략)	3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7